

2018학년도 제3차
<제336차 이사회 회의록>

2018. 8. 23.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8학년도 제3차

〈제33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18. 8. 23(목) 07:30 ~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8년 8월 14일)

2.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2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박형주, 김선용 (11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 결석임원

- 이사 : 문길주(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 유희석, 교무처장 장우진, 기획처장 최정주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예산팀장 조경숙, 기획팀장 김의섭 (6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박병완, 기획처장 류지호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담당 신창규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중 열한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배홍기

이사 이영현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주 기획처장, 박병완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36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8-168호(2018.8.14)로 통보한 의안 제1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제2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의안 제5호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7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8호 의료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의안 제9호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안 제10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11호 아주자동차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의안 제12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13호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14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5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16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7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 의안 제18호 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승인(안), 의안 제19호 아주대학교 종합실험동 신축 승인(안), 의안 제20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21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22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23호 2018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의 23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임용권 변경입니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한 임용권에 대하여 이사회가 임용 동의 의결하는 것은 이사회가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라고 지적하였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병완

이사

이영현

다.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안으로 그 동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검토해 왔는데, 올해 다시 지적을 받아서 이를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원의 신규임용·재임용·승진 등 현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는 임용권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외의 임용권은 현행대로 총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는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별임용교원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관에서 삭제하고,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에 위임하여 따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및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를 이사장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각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는 교원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사회의 기능 변경,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변경, 학교법인을 법인으로 명칭 통일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총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아주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교원에 대한 선발권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적절히 운영되었는가에 대해 이사회가 검토하고 교원 임용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교내에서는 이번 임용권 변경으로 인해서 교원에 대한 선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정관이 개정된 후에도 교원 선발의 모든 과정에서 대학의 독자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무처장 장우진 : 우리 대학은 타 대학들과 달리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어서 자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부심이 낮아지게 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이 필요한 시기인데, 추진력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 장 : 이사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 최 홍 :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학교와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변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교수 임용은 학교가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사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 사 신 희 택 : 실질적으로 총장께서 제청을 하시므로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정도는 종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이사회는 임용, 승진 등 교원 관리에 대한 총장님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존중하고 인정하며 과거와 변화없이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형주

이사

이영현

이사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u>학교법인</u>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p> <p>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u>학교법인의</u> 직원 (당해 <u>학교법인</u>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p> <p>③ 이사장은 당해 <u>학교법인</u>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p>	<p>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u>법인</u>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p> <p>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u>법인의</u> 직원(당해 <u>법인</u>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p> <p>③ 이사장은 당해 <u>법인</u>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p>
<p>제24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u>결정</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법인의</u>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u>학교법인의</u>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u>법인이 설치한 총장 임용에 관한 사항</u>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u>교원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u>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24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u>의결</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인의</u>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u>법인의</u>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u>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총장 임용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u>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삭 제>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46조 (임용)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은 임용 당시 65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 임기 중에는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p>	<p>제46조 (임용) ① (현행과 같음)</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행진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u>총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u></p> <p>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p> <p>④ 전문대학의 처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총장은 <u>제2항의</u>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u>총장은</u> 제2항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u>임용에 관한</u>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u>다만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별임용교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u></p>	<p>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u>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u></p> <p>1.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2. <u>면직 중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총장은 <u>제2항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교원의 임용권을 행사했을 때에는</u>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삭 제> 제2항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삭 제></p>
<p>제6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심의에 관한 사항</u></p> <p>2. <삽 입>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p>	<p>제6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총장이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u></p>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백행주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p>2. <u>규정에 따라</u>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u>각 학교</u>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u>학교법인</u> 이사 6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원인 경우는 총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u>학교법인의</u>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u>법인</u>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u>법인</u> 이사 6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원인 경우는 총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u>법인의</u>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현행과 같음)</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환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8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p>⑤ (현행과 같음)</p>
<p>제7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p> <p>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u>해당기관</u> 소속직원 중에서 그 <u>임명권자</u>가 임명한다. <삽입></p>	<p>제7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u>별인</u> 소속직원 중에서 그 <u>임용권자</u>가 임명한다. 단,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사와 서기는 각 학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임용된 교원 및 이 정관 시행 전 임용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9월 1일 임용 대상인 교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③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정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기행

이사

이영현

- 제 2 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제 3 호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 제 4 호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 제 5 호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의.<일괄 심의>

교무처장 장우진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정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의 임용권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은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별임용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마찬가지로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은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상위레벨인 규정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총장이 결정하던 명예퇴직을 이사장이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상일 :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한 건으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4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가.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박상일 이 사 이영현
 - 8 -

현행	개정
<p>1. ‘전임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특별임용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p>1. ‘전임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삭제></p> <p>2. ‘특별임용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제13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p>	<p>제13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p>
<p>제18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삽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18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20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재임용 대상 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단, 휴직 중인 교원이 승진 소요년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원을 승진·재임용한다.</p>	<p>제20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p>
<p>제23조의2(석좌교수의 임명 등) ①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본교 교수로</p>	<p>제23조의2(석좌교수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흥주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임용시 석좌교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p> <p>②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u>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u></p> <p>③ 석좌교수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u>총장은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②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u>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u></p> <p>③ 석좌교수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u>단,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27조(징계사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u>이사장에게</u>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p>제27조(징계사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u>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u>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원 및 이 규정 시행 전 임용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9월 1일 임용 대상인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p>

나.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u>제48조</u>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u>제46조제7항</u>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행주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학교”라 한다)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본 대학교”라 한다)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u>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u></p> <p>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p>	<p>제8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u>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임용) ① 대우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u>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u> 다만, 대우조교수 직급의 대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p>	<p>제12조(임용) ① 대우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u>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u> 다만, 대우조교수 직급의 대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특별임용교원 및 이 규정 시행 전 임용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9월 1일 임용 대상인 특별임용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p>

다. 아주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 전문

제정 전문
<p>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승영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제2조(구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중점교수 :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으로서 전공부분 담당교원과 외국어 회화 담당교원으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원)에 소속된 교원. 단, 학사과정에 없는 전공부분,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담당교원은 내국인도 임용가능
2. 연구중점교수 :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원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

제3조(자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직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중점교수 : 부교수(전공부분 담당교원에 한함), 조교수
2. 연구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3. 산학협력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제5조(임용의 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부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7조(겸직 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제8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주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 1 절 신규 임 용

제10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교원신규임용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의2와 관련한 신입교원심사위원 및 선정후보자를 소속부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3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트랙
2. 임용기간
3. 보수
4. 책임사항
5. 재임용
6.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용조건

제14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

1. 경력환산 기준은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 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의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15조(특별채용)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행주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는 경우 학과장(주임교수) 및 대학(원)장/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학자
 4. 외국인
-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제 2 절 교수업적평가

제16조(업적평가 시행) ①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에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따른다.

제18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 3 절 승진·재임용·승급

제19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재임용 대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학과장 제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0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최저 승진 소요년수는 8년으로 한다.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할 수 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승우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제21조(승진·제임용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제임용 요건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2조(업적심사기간) 업적심사기간은 「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한다.

제23조(승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3장 제4절을 준용한다.

제 3 장 신 분 보 장

제24조(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사망

제 4 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 5 장 복 무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행주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제30조(복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
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병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
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32조(해외여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및 보강계
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여행허가원을 출국예정 7일 전까지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
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사항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u>선정</u>,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 2. 장기근속 교원 3. 상위직 교원</p> <p>② <u>총장은 전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교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사회 동의 를 얻어 명예퇴직자를 결정한다.</u></p> <p>③ <u>명예퇴직대상자가 결정되면 교무처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u></p>	<p>제5조(명예퇴직의 확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u><삭 제></u> 총장에게 추천하 여야 한다.</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 2. 장기근속 교원 3. 상위직 교원</p> <p>② <u>명예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한다.</u></p> <p>③ <u>명예퇴직자가 확정되면 교무처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u></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성진

이사

이영현

- 제 6 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제 7 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 제 8 호 의료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 제 9 호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의.<일괄 심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은 정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별임용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은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상위레벨인 규정으로 조정하는 건으로 의료원 교원 인사규정과 동일한 체계로 제정하였습니다.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명예퇴직 결정권자를 총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특이사항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4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가.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3 조 (적 용)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조 (적 용)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주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나.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 학원 정관」 제46조 제6항에 의하여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이하 “특별임용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 학원 정관」 제46조 제7항에 의하여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이하 “특별임용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임 용) ① 석좌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의료원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에게 제청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임 용) ① 석좌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 12 조(임 용) ① 대우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유)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우부교수 이상의 대우교수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 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 대우교수의 임용기준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교원임용규칙」을 준용한다.	제 12 조(임 용) ① 대우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유)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 다만, 대우조교수 직급의 대우교수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이 임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행규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특별임용 교원 및 이 규정 시행 전 임용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9월 1일 임용대상인 특별임용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p>

다. 의료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 전문

제정 전문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의 인사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구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중점교수 : 의학교육, 간호학교육 또는 특수교육영역을 중점적으로 전담하는 교원 2. 연구중점교수 : 연구를 중점적으로 전담하는 교원 3. 진료중점교수 : 진료를 중점적으로 전담하는 교원
<p>제 3 조(자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4 조(직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p>
<p>제 5 조(임용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p>
<p>제 6 조(임용기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계약기간 내에 정년이 될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까지 임용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p>제 7 조(겸직제한)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p>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백영민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파견근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

제 9 조(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 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 1 절 신규임용

제 10 조(공개채용의 원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임용절차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트랙
2. 임용기간
3. 보수
4. 책임사항
5. 재임용
6.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용조건

제 13 조(특별채용)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특정 임상분야의 권위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외국인
-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교수업적평가

제 14조(업적평가 시행)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현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제 15 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진료영역(진료중점교수)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따른다.

제 16 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 3 절 승진 · 재임용

제 17 조(승진, 재임용 절차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18 조(최저 승진 소요연수와 특별승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최저 승진 소요연수는 8년으로 한다.

② 최저 승진 소요연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1년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제 19 조(업적심사기간) 승진 심사 시 업적심사기간은 최근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로 한다.

제 20 조(승진·재임용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 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서식)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신분보장

제 21 조(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휴직 및 복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직은 예외로 한다.

제 23 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사망한 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제 4 장 징 계

제 24 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징계의 사유 및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 61조 및 「정관」 제68조를 따른다.

제 25 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 5 장 복 무

제 26 조(복 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진료(진료 중점교원)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7 조(타교출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교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병 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월 일정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29 조(해외여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학회 또는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의료원 교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학(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해외연수 및 연구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장단기해외연수 및 연구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의료원 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6조(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 2. 장기근속 교원</p>	<p>제6조(명예퇴직의 확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삭 제>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 2. 장기근속 교원</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희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3. 상위직 교원</p> <p>② <u>총장은 전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자를 결정한다.</u></p> <p>③ <u>명예퇴직대상자가 결정되면 소속대학(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3. 상위직 교원</p> <p>② <u>명예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한다.</u></p> <p>③ <u>명예퇴직자가 확정되면 소속대학(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제 10 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제 11 호 아주자동차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발의.<일괄 심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환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은 정관 개정에 따라서 총장이 임용하던 교원인사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호 안건은 아주자동차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칙을 상위레벨인 규정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 특이사항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정(안)의 2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진

이사

이영현

가.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2조(교원의구분) ① 정관 제 46조 제2항의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p> <p>1. [삭제 2017.8.30.] 2. [삭제 2017.8.30.]</p> <p>② 정년트랙 교원은 일반교원과 산학협력중점 교원으로 구분한다.</p> <p>1. 일반교원 :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2.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p> <p>③ 비정년트랙 교원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과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1. 비정년 외국인교원 :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교원</p>	<p>제2조(교원의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비정년트랙 교원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과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 <삭제></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제15조(승진·제임용 제청) ① 승진·제임용 대상 교원이 있는 경우 교학처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의 업적 등을 심사한 후,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청한다. 단, 휴직중인 교원이 승진 소요년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복직후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p> <p>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승진·제임용 한다.</p>	<p>제15조(승진·제임용 제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교원의 승진·제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p>
<p>제21조(징계사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p> <p>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p>	<p>제21조(징계사유)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p> <p>1호 내지 6호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2.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원 및 이 규정 시행 전 임용절차가 완료되어 2018년 9월 1일 임용 대상인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나. 아주자동차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정 전문

제정 전문
<p>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자동차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비정년트랙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 분)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전공에 소속된 교원으로 구분 한다.</p> <p>제3조(자 격)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p> <p>제4조(직 위)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 : 부교수, 조교수</p> <p>제5조(임용의 시기)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수영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제6조(임용기간)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부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7조(겸직 제한)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제8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②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 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 1 절 신 규 임 용

제10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인사 규칙을 따른다.

제12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3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트랙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주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2. 임용기간
3. 보수
4. 책임사항
5. 재임용
6.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용조건

제14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

1. 경력환산 기준은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 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의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 2 절 교수업적평가

제15조(업적평가 시행) 본 대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제16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 3 절 승진·재임용

제17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재임용 대상자인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학처장에게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8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①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최저 승진 소요년수는 8년으로 한다.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할 수 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규

이사

이영현

제정 전문

제19조(승진·재임용 요건)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분보장

제20조(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휴직)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당연면직)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사망

제 4 장 징 계

제23조(징계사유)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 5 장 복 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홍익

이사

이명현

제정 전문

제26조(복무)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취업, 창업, 산학 활동,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병가) ①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28조(해외여행)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및 보강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여행허가원을 출국예정 7일 전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제 13 호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일괄 심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은 제334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총장이 임명하던 처장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은 정관 제46조제4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특이사항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주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2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가.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6조(처) ①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두고 각 처의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u>총장이 보한다. 단, 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③ 각 처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팀을 둘 수 있다.</p> <p>④ 각 처의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제6조(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u>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 (보직임기 및 직위의 해제) ① <u>총장이 임면하는</u>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보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p>제6조의2 (보직임기 및 직위의 해제) ① <u>보직교원 중</u>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처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p>

나.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정영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관 제46조 제6항에 따라 아주자동차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 제46조 제7항에 따라 아주자동차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제 14 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전기이월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분반 편성으로 인한 시간강의료 증액, 노후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한 관리운영비 증액, 학생지원 및 추계체육대회 지원 목적의 학생연구경비 증액 등을 지출로 편성하여 등록금 회계 기타이월금을 2018년도 기준인 1% 이내로 조정한 예산(안)입니다.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1,350천원이 증가한 10,717,20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1차 추경(안)은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자산매입지출 중 정문아치 보수공사는 구축물매입비로 직접교육비도 아니고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 검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 성 복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백영현** 이 사 **이영현**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 수입	6,402,760	6,402,760	-
	전입및기부수입	2,651,685	2,651,685	-
	교육부대수입	947,689	947,689	-
	교육외수입	125,502	125,502	-
	투자및기타자산수입	12,800	12,800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76,768	135,418	441,350
	계	10,717,204	10,275,854	441,350
지 출	보 수	3,894,689	3,876,689	18,000
	관 리 운 영 비	2,536,775	2,380,135	156,640
	연 구 학 생 경 비	3,496,735	3,491,735	5,000
	교 육 외 비 용	57,930	57,930	0
	예 비 비	70,000	40,000	30,000
	투자및기타자산지출	250,000	250,000	0
	고정자산매입지출	145,310	110,310	35,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65,765	69,055	196,710
	계	10,717,204	10,275,854	441,350

제 15 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2008년도에 도입한 감마나이프 장비로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신규 교체하기로 확정된 장비로 신규장비 입고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어 즉시 반출을 위해 폐기 처분하기로 한 바, 이에 대하여 불용 처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 성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석영

이사

이영현

제 16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결산에 의거한 전기 이월자금의 예산편성,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 예산편성, 수입예산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반영, 권역외상센터 국고수입 및 지출 증가분 반영, 기타 기본금 증가, 교직원 성과 격려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의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3백만원 증가한 646,87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2018학년도 아주대병원 1차 추정안은 의료수익이나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도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한 추정 예산안으로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에 2018학년도 임단협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예비비 40억 전액이 인건비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수익 대비 의료이익률이 다시 4.3%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이익률 및 경상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만한 임·단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박상일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광국

이사

이영현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547,800	541,500	6,300
	의 료 외 수 입	28,816	25,543	3,273
	차 입 금	19,493	9,500	9,993
	기 타 수 입	10,963	963	10,000
	전 기 이 월 자 금	39,801	46,694	-6,893
	계	646,873	624,200	22,673
지 출	의 료 지 출	464,398	463,106	1,292
	의 료 외 지 출	32,926	29,403	3,523
	고 정 자 산 지 출	32,186	20,662	11,524
	차 입 금 상 환	11,292	11,292	0
	전 출 금	56,614	56,080	534
	기 타 지 출	4,993	5,993	-1,000
	차 기 이 월 자 금	44,464	37,665	6,800
	계	646,873	624,200	22,673

제 17 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교원 승진임용 대상자는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대상이 5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대상이 8명, 총 13명으로 모두 승진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조건부 재임용 1명을 포함한 4명이며, 특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대우부교수 1명과 대우조교수에서 대우교수로 직급을 변경한 1명입니다. 이에 대한 임용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승진임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임용 대상자는 총 5명으로 전임교원 조교수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5명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2명,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3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호

이사

이영현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생화학교실	이진구	조교수	2018.9.1.~2022.8.31.(4년)
	외과학교실	강병희	조교수	2018.9.1.~2022.8.31.(4년)
	신경외과학교실	노태훈	조교수	2018.9.1.~2022.8.31.(4년)
	산부인과학교실	곽동욱	조교수	2018.9.1.~2022.8.31.(4년)
	직업환경의학교실	정인철	조교수	2018.9.1.~2022.8.31.(4년)

- 이상 의료원 5명 -

나.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기계공학과	김동권	교수	2018.9.1. ~ 정년
	기계공학과	이진우	교수	2018.9.1. ~ 정년
	소프트웨어학과	최영준	교수	2018.9.1. ~ 정년
	영어영문학과	유선무	교수	2018.9.1. ~ 정년
	경제학과	김성환	교수	2018.9.1. ~ 정년
	화학공학과	김주형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신소재공학과	조인선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환경안전공학과	정승호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전자공학과	허용석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전자공학과	홍영대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수학과	박보람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생명과학과	송영훈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금융공학과	유재인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의 료 원	마취통증의학교실	김대희	부교수
병리학교실		권지은	부교수	2018.9.1. ~ 2024.8.31(6년)
보건대학원		이은현	교수	2018.9.1. ~ 정년
간호학과		박진희	교수	2018.9.1. ~ 정년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혜진	교수	2018.9.1. ~ 정년

- 이상 본교 13명 / 의료원 5명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호

이사

이영현

다.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소프트웨어학과	윤대균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8.9.1 ~ 2021.8.31(3년)
사이버보안학과	김종현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8.9.1 ~ 2021.8.31(3년)
수학과	문남식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8.9.1 ~ 2021.8.31(3년)
화학과	임창수	(연구중점) 조교수	2018.9.1 ~ 2021.8.31(3년)
스포츠레저학과	이 현 서	대우부교수	2018.9.1 ~ 2020.8.31(2년)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구 자 열	대우교수	2018.9.1 ~ 2019.8.31(1년)

- 이상 본교 6명 -

제 18 호 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먼저, 신축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남제관 기숙사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고, 의대 및 간호대의 기숙사 요청 공간을 수용하고자 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확대하기 위한 기숙사 공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건축연면적 4,290평의 규모이며, 대략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재원조달 계획 및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김 성 진 :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기숙사 건물 신축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규 모	지하 1층, 지상 11층	설계 후 일부 변동 가능
증축면적	연면적 : 4,290평 (건축면적 346평)	
공사기간	2019. 8~2021. 1 (18개월)	
추정소요예산	공사비 30,089백만원 <건물 시공비, 설계·감리·인허가, 부대공사(진입도로 등), 쿨링타워 이전, 변압기 증설 비용 등 포함>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진

이사

이영현

제 19 호 아주대학교 종합실험동 신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종합실험동 신축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먼저, 신축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21차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던 약학관 증축 공간을 대체하고, 노후화된 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LINC+사업 수행과 연계하여 산학협력을 위한 공동의 연구공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의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3,000평이 되겠습니다. 공간 구성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계획 및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주차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신 상 협 : 캠퍼스 내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고 중심부가 잘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을텐데 이런 점들을 보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종합실험동 신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종합실험동 건물 신축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규 모	지하 1층, 지상 9층	설계 후 일부 변동 가능
증축면적	연면적 : 3,000평 (건축면적 300평)	
공사기간	2020. 1 ~ 2021. 7 (19개월)	
추정소요예산	공사비 21,780백만원 <건물 시공비, 설계·감리·인허가 등 포함>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주영

이사

이명현

제 20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법인 내부감사에서 학생상담 지도제도와 관련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학생 상담 및 지원과 성폭력 상담과 조치를 위한 대응 조직을 전면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부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와 장애학생지원실을 두는 것으로 개편하며, 종합지원센터를 지원기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창업 지원부서의 기능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창업지원단의 창업기획팀과 산학부총장 직속 프로젝트지원팀을 폐지하고, 각각 창업지원팀과 산학기획팀에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학본부의 감사팀을 폐지하고, 산학협력단 산하에 산학감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인권센터를 신설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직원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범위를 확대시켜 교직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현재 성폭력상담센터가 직원 문제도 다루었고, 인권상담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사 박 상 일 : 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상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총장 직속으로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교수와 학생 또는 직원들 사이의 갈등조정 역할에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총장직속기구로 두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인권센터 직제를 부속기관에서 총장직속기구로 하는 것이 어떻까요?

이 사 김 성 진 :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신설된 인권센터 직제를 부속기관에서 총장직속기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호

이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 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4. <삭제>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교육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교육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진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안)
<p>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p> <p>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p> <p>6.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p> <p>7. 학생처 : <u>아주상담·지원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u>,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u><삽입></u></p> <p>8. 총무처 : 예비군연대</p> <p>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p> <p>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p> <p>11. 중앙도서관 : 출판부</p> <p>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p> <p>13. <삭제></p> <p>14.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대외협력실,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및 <u>창업지원단을 둔다.</u></p> <p>⑨ <u>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프로젝트지원팀을 둔다.</u></p>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p> <p>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p> <p>6.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p> <p>7. 학생처 : <삭제>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u>종합지원센터</u></p> <p>8. 총무처 : 예비군연대</p> <p>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p> <p>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p> <p>11. 중앙도서관 : 출판부</p> <p>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p> <p>13. <삭제></p> <p>14.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대외협력실,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u>창업지원단 및 인권센터</u>를 둔다.</p> <p>⑨ <삭제></p> <p>⑩ (현행과 같음)</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교무처는 교육 관련 행정 및 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및 교원팀을 둔다.</p> <p>② 연구정보처는 연구관리 및 전산개발/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 및 정보시스템팀을 둔다.</p> <p>③ 학생처는 학생활동 지원 및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학생지원팀을 둔다.</p> <p>④ 총무처는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구매관재팀, 재무회계팀 및 시설팀을 둔다.</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영국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안)
<p>성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및 감사팀을 둔다.</p> <p>⑥ 입학처는 학사과정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학생선발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입학팀을 둔다.</p> <p>⑦ 국제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국제교류팀 및 국제화사업팀을 둔다.</p> <p>⑧ 각 처에 처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p> <p>⑨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화사업팀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성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u>기획팀 및 예산팀</u>을 둔다.</p> <p>⑥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 2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삽입> 및 LINC사업팀을 둔다.</p> <p>③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특별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p>	<p>제11조의 2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u>산학감사팀</u> 및 LINC사업팀을 둔다.</p> <p>③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안)
<p>기구를 둘 수 있다.</p> <p>⑤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삭제></p> <p>② 대외협력실은 기금모금 업무 및 대학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발전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p> <p>③ 비서실은 총장 의전 업무를 담당한다.</p> <p>④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정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u>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 및 창업보육센터</u>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⑧ 대외협력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대외협력실의 경우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⑩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⑪ 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p>⑦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삭제> 창업지원팀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p> <p>⑧ <u>인권센터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 처리 등 인권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하부조직으로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과 운영팀을 둔다.</u></p> <p>⑨ 내지 ⑫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백정경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⑫ <삭제> ⑬ <삭제> ⑭ 대외협력실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⑮ 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⑯ 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⑬ <u>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⑭ <삭제> ⑮ <삭제> ⑯ (현행과 같음) ⑰ (현행과 같음) ⑱ (현행과 같음) ⑲ <u>인권센터의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 ⑳ <u>장애학생지원실에는 실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 ㉑ <u>인권센터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제12조의2 (부총장직속기구) ① <u>프로젝트지원팀은 산학부총장 직속으로 교수 연구수주 진흥을 위한 기획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u></p> <p>② <삭제> ③ <u>프로젝트지원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u></p>	<p>제12조의2 (부총장직속기구) ①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p>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호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안)
<p><u>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 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p>	<p>④ 내지 ⑦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제 21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등록금, 국고수입, 전입금 및 기금인출 등 수입예산 변동에 따른 지출 예산을 반영하고, 2017학년도 결산 확정 에 따른 이월금 지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6억원이 증가한 2,7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정주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1차 추경안은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보다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운영수지라든지 기금이 본예산대비 감소되어서 질적으로는 조금 취약해진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종합실험동 신축 설계비 등 일부 자산취득 예산은 차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이 외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성복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및수강료수입	1,266	1,259	7
	전입및기부금수입	1,020	984	36
	교육부대수입	142	139	3
	교육외수입	30	28	2
	투자외기타자산수입	176	141	35
	고정부채수입	2	2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04	51	53
	계	2,740	2,604	136
지 출	보 수	1,311	1,285	26
	관 리 운 영 비	257	251	6
	연구 학생 경비	830	772	58
	교육 외 비 용	10	9	1
	자 산 취 득	190	146	44
	투자외기타자산지출	82	74	8
	고정부채지출	15	15	0
	예 비 비	8	2	6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7	50	-13
	계	2,740	2,604	136

제 22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8.8.31자로 임기만료 예정 보직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총장의 제청을 받아 자연과학대학장에 생명과학과 최상돈 교수, 경영대학장에 경영학과 이홍재 교수,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에 의학과 오영택 교수, 간호대학장에 간호학과 송미숙 교수, 경영대학원장에 경영학과 박호환 교수, 정보통신대학원장 겸 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에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구 교수, 교육대학원장에 수학과 이형천 교수, 병원장에 의학과 한상욱 교수, 기획조정실장에 의학과 박준성 교수를 2018년 9월 1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김혜선 교수는 2018년 3월 1일부로 대학원장에 임명된 후 3월 22일부로 자연과학대학장에 대한 보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명 제청된 보직 교원의 자세한 이력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영

이사

이명현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와 의료원에 큰 도움이 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요청일자	비 고
자연과학대학장	생명과학과	교수	최상돈	2018. 9. 1부	신임
경영대학장	경영학과	교수	이홍재	2018. 9. 1부	신임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의학과	교수	오영택	2018. 9. 1부	신임
간호대학장	간호학과	교수	송미숙	2018. 9. 1부	신임
경영대학원장	경영학과	교수	박호환	2018. 9. 1부	신임
정보통신대학원장 겸 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김민구	2018. 9. 1부	연임
교육대학원장	수학과	교수	이형천	2018. 9. 1부	신임
병원장	의학과	교수	한상욱	2018. 9. 1부	신임
기획조정실장	의학과	교수	박준성	2018. 9. 1부	신임

제 23 호 2018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661백만원이 증가한 83,00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7백만원이 증가한 9,12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회의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현 상임이사가 법인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정호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전체적으로 잘 작성이 된 예산(안)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신 희 택 : 추경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8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2018학년도 예산액	증감
수입	전입금수입	15,929	16,429	-500
	기부금수입	1,500	1,500	-
	예금이자수입	770	770	-
	수익재산수입	2,000	2,000	-
	잡수입	5	5	-
	수익용예금인출	4,115	-	4,115
	투자자산수입	1	1	-
	원금보존기금인출	-	4,115	-4,115
	장기차입금차입	30,350	30,350	-
	임대보증금수입	285	285	-
	전기이월자금	28,049	16,888	11,161
	계	83,004	72,343	10,661
지출	보수	797	797	-
	관리운영비	1,284	1,274	10
	지급이자	1,032	1,032	-
	법정부담전출	8,716	8,716	-
	경상비전출	3,110	3,070	40
	예비비등	201	201	-
	부속병원	10,000	-	10,000
	임의기금적립	85	85	-
	고정자산매입	35,841	35,841	-
	장기차입금상환	1,092	1,092	-
	임대보증금환급	285	285	-
	차기이월자금	20,561	19,950	611
계	83,004	72,343	10,661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2018학년도 예산액	증감
수입	장례식장운영수입	4,965	4,965	-
	임대료수입	3,668	3,668	-
	관리비수입	17	17	-
	예금이자수입	1	1	-
	잡수입	2	2	-
	전기이월자금	469	302	-
	계	9,122	8,955	0
지출	보수	737	737	-
	관리운영비	1,347	1,347	-
	장례식장운영비	606	606	-
	예비비	50	50	-
	잡손실	2	2	-
	전출금	5,500	6,000	-500
	고정부채상환	37	37	-
	고정자산매입	100	100	-
	차기이월자금	743	76	667
	계	9,122	8,955	167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장 : 제336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이영현 상임이사, 박형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박형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형주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36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8 년 8 월 23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 사	김 성 진	김성진
이 사	윤 성 복	윤성복
이 사	신 희 택	신희택
이 사	김 성	김성
이 사	박 상 일	박상일
이 사	신 상 협	신상협
이 사	이 영 현	이영현
이 사	최 홍	최홍
이 사	박 형 주	박형주
이 사	김 선 용	김선용
감 사	문 휘 창	문휘창
감 사	배 홍 기	배홍기